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1일,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 의원)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소지·관리·제공 등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히 임용을 제한한 것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 형사미성년자(14세) 및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소위·하사 29세)을 감안할 때, 임용결격기간을 15년 미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범죄의 공익침해의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개정안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사용 등 중한 범죄에서부터 비교적 경미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허가증의 양도, 마약류 관련 보고 사항의 누락 등을 포괄하고 있는바, 3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를 그 범죄유형 중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국가공무원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용결격기간을 10년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